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]

- 점검일시 : 2020.09.24 (목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<p>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</p> <p>- 돈화문로 사용 준비 중인 이동식 발전기 운반 걸이에 섬유로프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인양능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와이어로프나 벨트슬링으로 운반 전에 교체 요망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(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)</p>	
<p>○ 품질관리(토목부)</p> <p>- 현장 전체적으로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므로 침하된 블록경계, 유도블록 미설치, 맨홀판석 미설치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여 빠짐없이 마감 요망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</p> <p>- 서순라길 3거리 교차로 종묘 외벽에 붙여 야적한 팔레트 목재는 매우 건조된 상태로 방치되어 담배꽂초 투척 등에 의한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조치 요망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</p>	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차선도색용 도료를 녹이는 작업차량은 다음 사항을 정비 후 작업 요망

① LPG 가스용기를 눕혀서 사용할 경우 고압의 기체보다는 액체상태의 가스가 바로 조정기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조정기의 성능이 떨어져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세워서 사용하도록 조치

② 차량에 눕혀 사용 중인 LPG 가스용기는 조정기와 역화방지기 모두 미설치 상태이고, 이동식 도색장비에 사용 중인 LPG 가스용기는 역화방지기가 없으므로 조치 후 작업

※ 역화방지기는 가스토치로부터 가스가 역류되면 역화방지기의 안전밸브가 열리고, 체크밸브가 닫혀 발생된 압력을 대기로 배출 시켜 폭발 예방

③ 작업차량이 경사지에 정차 시에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름방지조치토록 재발방지 교육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(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·기구 등의 신고방법)

※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5호(특정설비) -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

※ 가스안전공사

